

청 원 요 지 서				
접수년월일	1994. 8. 24		접수번호	131
청원인	주소	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4-8	성명	강영욱
소개의원	조 소 현 의원		소관위원회	도시정비위원회
건명	아파트 당첨 및 피분양권 인정요구			
<p>○대상물건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4지구 국민주택아파트 403동 604호 (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분양분중 26평형 1세대)</p> <p>○제출경위</p> <p>-청원인은 사실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'92.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상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(26평형)에 당첨되어 '92.2.18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증도금 34,007,000원까지 납부하였으나,</p> <p>-도시개발공사에서는 '92.7월 주택전산망 조회를 실시, 청원인이 '88.7.13일자로 강원도 삼척군에 소재한 67㎡의 가옥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어 당첨 및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, 계약금 및 증도금을 반환하였으며, 본의아닌 부정당첨자가 되어, 향후 10년간 국민주택 청약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었으며,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도 한푼없어 정신적·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임.</p> <p>-그러나, 청원인의 주택소유 사실이 발견된 것은 청원인의 오빠 강영신이 청원인과의 사전협의나 승락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한 것으로 청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, 강원도에 소재한 해당가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으며, 이미 '92.9.4일 멸실되었고,</p> <p>-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법취지를 볼 때 사실상의 무주택자인 청원인은 당연히 구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임.</p> <p>○청원내용</p> <p>-주택소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, 청원인은 권리를 구제하여, 도시개발공사와의 아파트 당첨 및 분양계약이 유효화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적극적인 조치있기를 청원함.</p>				
<p>○委員長 朴泰源 委員 여러분, 그리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住宅局은 이것으로 終結을 짓겠습니다. 그리고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. (議事棒 3打) (17時 22分 會議中止) (17時 37分 繼續開議)</p> <p>○委員長 朴泰源 座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. (議事棒 3打)</p>				
<p>어제 都市計劃局 意見聽取審査 中 現場確認 및 保留하였던 議案番號 1209號, 1162號, 1163號, 1164號에 대하여 再審査하기로 하겠습니다. 委員 여러분,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權光澤委員,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權光澤委員 어제 保留가 되었던 市街地造成事業區域決定 1162號, 1163號, 1164號는 이 事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造成事業區域決定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用役을 주어서 이 事業을 進行하기가 어렵다는 執行部의 建議가 있</p>				